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0367 지방세경정 일부 불가 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5. 30.
판 결 선 고	2018. 6. 2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432,707,600원의 지방세환급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가. 원고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7. 2.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redacted]시 [redacted]읍 [redacted]리 444-2 외 122필지의 부동산을 각 취득하였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 3,265,616,57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1. 피고로부터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고, 2015. 7. 30. 피고에게서 공동주택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위 공동주택건설사업부지 중 도시계획시설(공원, 녹지, 도로 등)부지에 해당하는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2항[1]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에 따라 2016. 12. 5. 원고에게, 원고가 2011. 11.경부터 2015. 6.경까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516,358,150원을 환급하였으나, 원고가 2007. 2. 26. 및 2011. 5. 19.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432,707,600원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5년의 시효로 소멸하여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1) 비과세 대상에 관하여, 지방세법이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에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에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마. 원고는 2017. 2. 23. [redacted]도지사에게 이 사건 회신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redacted]도지사는 2017. 4. 28.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인 3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어서, 이에 대한 회신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 각하하였고, 원고가 다시 2017. 7.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0. 23.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련 법령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5. 7.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무상귀속 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5. 7. 28. 비로소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79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2015. 7. 28.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일이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회신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은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추게 된 2015. 7. 28.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 3년이 도과되기 이전에 제기된 것이므로, 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회신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 여부

이 사건 경정청구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회신은 위 취득세 등의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및 제77조의 지방세환급금 및 지방세환급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지방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 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따른 지방세환급금결정(가산금 포함)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방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지방세환급금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더 나아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살펴본다.

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07. 2. 26.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부분

가) 국세기본법 또는 개별 세법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세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 등 참조)

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고, 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서 비로소 지방세 납세자에게 경정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위 법은 2011. 1. 1.부터 시행하고, 위 법의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7. 2. 26. 이 사건 ①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는 제외함)은 모두 2011. 1. 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2011. 1. 1. 시행된 위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해당 취득세 등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세 등 중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국세이기는 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만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 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상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세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농어촌특별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①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011. 5. 19. 취득한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②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부분

가) 경정청구의 기산일

(1)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비과세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과세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그 이후에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그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다만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날에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4. 21.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은 후, 2011. 5. 19. 이 사건 ②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2015. 7. 28.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화성시에 이를 기부채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9. 화성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이 사건 ②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들고 있는 2015. 7. 28.은 이 사건 ② 부동산이 원고에 의하여 화성시에 기부채납된 날에 불과하고, 2015. 7. 28. 비로소 이 사건 ② 부동산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거나,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사건 ②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취득일인 2011. 5. 19.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2011. 5. 19.부터 취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60일이 지난 2011. 7. 18.이 된다.

나) 이 사건 회신의 처분성 여부

(1)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는 앞서 본 것과 같은 경정청구의 기산일인 2011. 7. 18.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10. 6.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②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회신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판사 인진섭

판사 권순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별지1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취득세납부내역서(봉담읍 등화리)

지번	지목	면적	과세표준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납부일
445-10	공장용지	42	315,000,000	12,600,000	1,260,000	630,000	14,490,000	2011. 11. 24.
445-11	공장용지	133						
440-29	잡아	5	15,076,030	603,040	60,300	30,150	693,490	2012. 07. 25.
440-30	임야	47						
312-19	공장용지	7	4,966,826	199,420	19,940	9,970	229,330	2012. 07. 25.
312-20	공장용지	11	7,834,555	313,380	31,330	15,660	360,370	
549-58	임야	8	5,697,858	227,910	22,790	11,390	262,090	
551-4	잡종지	6	4,273,393	170,930	17,090	8,540	196,560	
551-5	잡종지	11	7,834,555	313,380	31,330	15,660	360,370	
551-6	잡종지	6	4,273,393	170,930	17,090	8,540	196,560	
551-7	잡종지	14	9,971,251	398,850	39,880	19,940	458,670	
551-9	잡종지	84	59,827,509	2,393,100	239,310	119,655	2,752,065	
551-11	대	17	12,107,948	484,310	48,430	24,210	556,950	
551-12	공장용지	8	5,697,858	227,910	22,790	11,390	262,090	
440-2	공장용지	256	969,700,000	80,000,000	8,000,000	4,000,000	92,000,000	2013. 03. 20.
440-6	공장용지	255	965,900,000					
440-8	도로	2	7,600,000					
440-23	도로	6	22,700,000					
440-9	도로	9	34,100,000					
173-1	답	189	171,700,000	6,868,000	686,800	343,400	7,898,200	2013. 03. 20.
173-2	답	135	125,400,000	5,016,000	501,600	250,800	5,768,400	
141-17	전	225	204,400,000	8,176,000	817,600	408,800	9,402,400	
141-18	전	57	51,800,000	2,072,000	207,200	103,600	2,382,800	
141-19	전	1	900,000	36,000	3,600	1,800	41,400	
140-21	대	227	206,200,000	8,248,000	824,800	412,400	9,485,200	
141-10	대	461	438,900,000	17,476,000	1,747,600	873,800	20,097,400	
50-3	전	419	342,200,000	20,024,000	2,002,400	1,001,200	23,027,600	2013. 03. 20.
50-4	전	192	156,800,000					
50-5	전	2	1,600,000					
49-1	임야	25	22,800,000	912,000	91,200	45,600	1,048,800	2013. 03. 20.
40-1	도로	108	112,214,780	51,862,038	5,186,200	2,593,100	59,411,338	2013. 03. 20.
40-20	도로	1	1,055,830					
41-2	대	1113	1,178,277,450					
35-6	전	129	117,100,000	10,020,000	1,002,000	501,000	11,523,000	2013. 03. 20.
35-7	전	147	133,400,000					
35-8	전	28	27,600,000	15,508,000	1,550,800	775,400	17,834,200	2013. 03. 20.
35-9	전	153	150,900,000					
35-11	전	84	82,900,000					
35-12	전	127	125,300,000					
35-13	전	1	1,000,000					
8	임야	727	2,400,000,000	96,000,000	9,600,000	4,800,000	110,400,000	2014. 05. 28.
8-2	임야	31						
0	임야	866						
0-15	도로	82						
0-18	임야	1038						
0-19	임야	180						
0-26	도로	1						
1-5	잡종지	328	369,051,000	52,000,000	5,200,000	2,600,000	59,800,000	2014. 09. 01.
1-7	전	139	164,872,000					
1-13	잡종지	445	527,928,000					
1-14	잡종지	98	116,241,000					
1-15	전	82	97,252,000					
1-16	전	4	4,746,000					
1-22	대	3	8,000,000	240,000	24,000	12,000	276,000	2015. 01. 30.
1-10	대	171	237,000,000	8,460,000	846,000	474,000	10,902,000	2015. 01. 30.
1-12	도로	5	1,500,000	72,000	7,200	3,600	82,800	2015. 01. 30.
1-24	도로	1	300,0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지번	지목	면적	과세표준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납부일
440-14	도로	35	16,264,000	650,560	65,050	32,520	748,130	2015. 01. 30.
307-2	전	598						
307-1	전	295	917,000,000	36,680,000	3,668,000	1,834,000	42,182,000	2015. 03. 31.
307-3	전	118						
301-12	도로	4	1,080,000					
301-13	도로	161	43,470,000	4,296,480	429,840	214,920	4,943,160	2015. 04. 08.
301-14	도로	101	27,270,000					
301-15	도로	132	35,640,000					
439-24	전	93	53,428,000	2,537,040	253,700	126,850	2,917,590	2015. 06. 08.
439-16	전	86	50,912,000	2,486,400	248,640	124,320	2,859,360	2015. 06. 08.
439-18	도로	19	11,248,000					
440-27	도로	12	11,040,000	441,600	44,160	22,080	507,840	2015. 05. 09.
							[illegible]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별지2 -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취득세납부내역서(봉담읍 동화리)

지번	지목	면적	과세표준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합계	납부일
393-6	공장용지	1	813,999	32,550	3,250	1,620	37,420	
394	공장용지	149	122,725,340	4,909,010	490,900	245,450	5,645,360	
394-3	전	60	48,839,400	1,953,570	195,350	97,670	2,246,590	
392-1	전	929	756,196,710	30,247,860	3,024,780	1,513,390	34,785,030	
392	전	84	52,095,360	2,083,810	208,380	104,190	2,396,380	2011. 05. 31.
392-3	전	47	38,257,530	1,530,300	153,030	76,510	1,759,840	
308-9	공장용지	13	10,561,870	423,270	42,320	21,160	486,750	
308-10	공장용지	160	130,238,400	5,209,530	520,950	260,470	5,990,950	
308-11	공장용지	1	813,990	32,560	3,250	1,620	37,420	
390	공장용지	42	39,661,820	1,582,070	158,200	79,100	1,819,370	
390-1	답	348	327,715,080	13,108,600	1,310,860	655,490	15,074,890	2011. 05. 31.
306-1	공장용지	423	419,810,580	16,792,420	1,679,240	839,620	19,311,280	
306-2	공장용지	202	200,476,920	8,019,070	801,900	400,950	9,221,920	
306-7	공장용지	501	497,222,460	19,888,890	1,988,880	994,440	22,872,210	2011. 05. 31.
306-8	공장용지	2	1,984,920	79,390	7,930	3,960	91,280	
446-3	임야	2	2,050,920	82,030	8,200	4,100	94,330	
446-4	임야	71	72,807,660	2,912,300	291,230	145,610	3,349,140	
397	전	16	17,591,040	703,640	70,360	35,160	809,160	
397-1	전	279	306,743,760	12,269,750	1,226,970	613,480	14,110,200	
397-3	전	242	266,064,480	10,642,570	1,064,250	532,120	12,238,940	2011. 05. 31.
397-4	전	3	3,298,320	131,930	13,190	6,590	151,710	
397-5	전	142	156,120,480	6,244,810	624,480	312,240	7,181,530	
441-4	공장용지	601	612,004,310	24,480,170	2,448,010	1,224,000	28,152,180	
441-9	전	271	355,948,750	14,213,950	1,421,390	710,690	16,346,030	2011. 05. 31.
442-2	답	258	261,544,920	10,461,790	1,046,170	523,080	12,031,040	
442-6	답	498	502,815,040	20,112,600	2,011,260	1,005,630	23,129,490	
442-7	답	354	561,611,660	22,464,470	2,246,440	1,123,220	25,834,130	2011. 05. 31.
442-9	답	24	24,329,750	973,190	97,310	48,650	1,119,150	
444-9	잡종지	589	896,604,500	35,864,180	3,586,410	1,793,200	41,243,790	
444-10	잡종지	380	587,430,600	23,497,220	2,349,720	1,174,860	27,021,800	
444-12	공장용지	275	425,114,250	17,004,570	1,700,450	850,220	19,555,240	2011. 05. 31.
444-13	공장용지	205	318,448,220	12,737,960	1,273,790	636,890	14,648,640	
47-3	대	29	42,106,840	1,684,270	168,420	84,210	1,936,900	
47-4	대	1	1,451,960	58,070	5,800	2,900	66,770	2011. 05. 31.
47-5	대	1	902,660	36,100	3,610	1,800	41,510	
47-6	대	33	29,787,450	1,191,490	119,140	59,570	1,370,200	2011. 05. 31.
48-1	전	259	272,931,610	10,917,260	1,091,720	545,860	12,554,840	
48-2	전	142	149,638,180	5,985,520	598,550	299,270	6,883,340	2011. 05. 31.
00-5	공장용지	784	615,784,960	24,631,390	2,463,130	1,231,560	28,326,080	
00-6	공장용지	351	275,689,440	11,027,570	1,102,750	551,370	12,681,690	2011. 05. 31.
44-8	도로	1	1,153,940	46,150	4,610	2,300	53,060	2007. 09. 07.
							432,707,60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별지3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부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제76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오납액), 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1.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3.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⑧ 제5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제77조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의 환급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환급하는 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급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을 준용한다.

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76조에 따라 충당 또는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환급금이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일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30

지방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에 대한 감면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 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1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② 제76조제6항에 따라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하고, 그 밖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환급)

농어촌특별세의 과오납금등(감면을 받은 세액을 추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환급은 본세의 환급의 예에 의한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불복)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끝.